

# 금천구 청년활동공간(서울청년센터금천, 청춘빨딩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번호	2611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13  
제출자 : 금천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서울청년센터금천」의 우리구 이관과 청춘빨딩 위탁계약 만료일(2025.4.24.) 도래에 따라, 청년활동공간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청년 사업 경험이 풍부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두 공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록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대상 시설

#### 1)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시설면적
(가칭)금천구 청년활동공간	서울청년센터금천 가산디지털1로 120, 1~2층	345.22㎡
	청춘빨딩 시흥대로138길 10-11	354.96㎡

\* 시설명은 미확정이며, 추후 민간위탁처 선정 공모시 명칭 변경 가능

### 나. 주요 위탁내용

1) 위탁기간 : 2025. 2. ~ 2027. 2. 28.

① 청년활동공간(서울청년센터금천) : 2025. 2. ~ 2027. 2. 28.

② 청년활동공간(청춘빨딩) : 2025. 4. 25. ~ 2027. 2. 28.

2) 위탁내용 : 청년관련 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

가) 청년활동공간(서울청년센터금천, 청춘빨당) 시설의 통합운영 및 관리

나) 청년활동공간(서울청년센터금천, 청춘빨당)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
다)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운영

라) 대외 파트너십 구축 및 대외기관 등의 협력사업 추진

마) 개인정보관리 및 CCTV 운영

바) 그 밖에 청년활동지원을 위하여 금천구와 합의한 사무

3)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4) 운 영 비 : 679백만원(시비286백만원, 구비393백만원)

### **3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**

청년시설 운영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(단체)을 선정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능률성 제고

### **4. 관계법령**

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제18조

## 관 련 근 거

#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#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개정 2016.7.1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<개정 2016.7.18.>

#### 제6조(수탁기관 선정)

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,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,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## 관 련 근 거

#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

#### 제18조(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)

-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4.3.8.>
-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-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- 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7.20.>
  1.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(대표자)
  2.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